

# 영화영상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비용인정기준 및 FAQ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국제교류지원팀

## 제 1 장 - 목적

1. 본 기준은 영화영상 인센티브 지원사업 제도의 신청대상 비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 제 2 장 - 제작인정비용의 정의

### 〈개요〉

2. 이 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영상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의 국내 집행 제작비용(이하 “제작인정비용”)을 정의한다.
3. 제작인정비용은 영상물 제작완료 후 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확인 회계감사보고서 상의 금액만 인정된다.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내에서의 제작비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비용과 그 외의 지출비용 항목을 분류하여 지원신청서에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4. 제작인정비용은 신청인이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법인카드(선불, 신용) 결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한 다음의 항목을 말한다. 법인카드 결제 및 은행송금은 반드시 사전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를 통해야만 한다.
  - 대한민국 영화영상 관련 산업체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외국인(이하 “거주자”)으로, 영화영상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
  - 대한민국에 위치한 토지 및 재화의 사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여기서 대한민국 사업자란 대한민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6. 제작인정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자는 증빙자료로 법인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통, 통신시설 미미 등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

출증비용 현금 영수증(법인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현금 집행을 할 수 있다.

7. 제작인정비용은 보조금 신청대상인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의 기간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단, 주연배우의 출연료는 총 배우·제작진의 인건비 신청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8. 제작인정비용은 영상물의 국내 본촬영일 3개월 이전부터 비용확인 감사보고서 작성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제작인정비용의 예시〉

9. 제작인정비용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 열거된 비용은 예시된 내역에 한해 인정한다.
  - (a) 영상물 프리 프로덕션 비용
  - (b) 저작권 취득비용
  - (c)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 (d) 배우 및 제작진의 보수
- (a) 영상물 프리 프로덕션 비용
10. 영상물 프리 프로덕션 비용이란 대한민국에서 영상물 본 촬영의 개시 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국내 본 촬영일 3개월 이전부터 발생한 비용만 인정한다.
  - (b) 저작권 취득 비용
11. 영상물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저작권의 금액은 해당 저작권자가 대한민국 사업자인 경우 제작인정비용에 포함된다.
12. 저작권 취득과 관련한 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작인정비용에 포함된다.
  - (c)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13. 대한민국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비용확인 감사보고서의 회계감사 수수료는 제작인정비용에 포함된다. 단, 비용확인 감사보고서의 감사인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인의 주주 및 출연자,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
  - 공인회계사법 제33조에 따라 직무제한을 적용받는 자가 아닐 것
  - 문체부 「민간보조금 정산관련 회계검사 시행기준」에 의거한 회계법인
- (d) 배우 및 제작진의 보수
14. 영상물에 출연하는 배우 또는 제작진으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영상물 제작에 제약조건

및 제한이 없는 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배우 및 제작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제작인정비용에 해당된다. 단, 대한민국 내에서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금액만 해당된다.

15.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하는 배우 또는 제작진의 보수 총액에 해당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에이전트 수수료는 제작인정비용에 해당된다.

### 〈제외 항목〉

16. 다음 비용 항목은 제작인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a) 금융비용
- (b) 배우 및 제작진의 대한민국 단기 방문과 관련된 항공비
- (c) 배우 및 제작진에게 지급되는 보수 이외의 금품
- (d) 재화에 포함된 용역의 비용
- (e)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 (f) 대한민국 외의 사업자에게 외주한 용역 수수료
- (g) 사무실 운영비
- (h) 진행비
- (i) 기타 위원회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비용

(a) 금융비용

17. 금융비용이란 영상 제작에 투자된 금액의 수익 지급 및 영상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에서 발생한 비용 및 동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은행 수수료 등을 말하며, 이는 제작인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b) 배우 및 제작진의 대한민국 단기 방문과 관련된 항공비

18. 거주자가 아닌 배우 및 제작진이 영상 제작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3일 이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항공비는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c) 배우 및 제작진에게 지급되는 보수 이외의 금품

19. 배우 및 제작진에게 사전에 약정하거나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타 금품은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외국 배우 및 제작진에게 지급하는 Per diem은 제작인정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d) 재화에 포함된 용역의 비용

20. 재화와 용역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로서 각 대가가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고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용역 수행의 대부분(비용의 50%이상)이 대한민국 외에서 수행된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작인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e)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21. 제작인정비용에 해당되는 저작권 취득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및 동 자산에 투자된 자본비용은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업용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참조).

(f) 대한민국 외의 사업자에게 외주한 용역 수수료

22.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하도급을 주어 후반작업 등 영상물 제작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g) 사무실 운영비

23.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 관련 소모품 및 잡비용은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h) 진행비

24. 숙박, 식대, 부식잡비, 교통, 우편/배송, 문구/소모품, 접대비 등은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i) 기타 위원회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비용

25.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1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업자에 집행한 비용과 선물, 상품권, 접대 및 사례금, 범칙금 등은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위원회가 동 사업의 매년 사업요강을 통해 인정하지 않기로 정한 제작비 내역은 제작인정비용에서 제외한다.

### 제 3 장 - 제작인정비용의 처리방침

#### 〈비용지출〉

27. 제작인정비용은 실제로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부가가치세〉

28. 본 지급기준에 명시된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정상거래비용〉

29. 정상거래원칙은 신청인과 모회사 및 자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간의 재화 또는 용역에 청구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규정한다.
30. 신청인의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특정 재화 또는 용역대가의 과다 지급으로 정상거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참조)으로 지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따른 비용만 제작인정비용에 해당한다.
31. 정상거래원칙은 신청인이 지출한 직접비용에 모두 적용된다.

### 〈제작 주체가 변경된 경우의 비용〉

32. 제작인정비용은 영상물 제작을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하고 완료한 회사에게도 인정된다. 사업을 양도한 회사가 제작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양도 회사의 보조금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단, 프로젝트를 인수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인정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3. 이 경우, 양수도 이후에 영상물 제작이 중단되는 때에는 지원금 최종신청이 불가능하며, 프로젝트 제작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4 장 - 집행 관련 FAQ

### 〈국내 인력대상 집행비용〉

34.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외국인(이하 “거주자”)으로부터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단, 국내공동제작사 또는 국내 프로덕션서비스사 직원의 인건비(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로소득 명기분)는 제외합니다.
35.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인건비가 100만원이 나가야한다면 원천징수액이 44,000원이라고 했을 때, 원천징수 전 금액이 100만원이고 징수 후 금액이 956,000원이 됩니다. 인정 금액은 원천징수전의 금액이므로 100만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국내 업체대상 집행비용〉

36.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외국인(이하 “거주자”)으로부터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집행비용 정산 시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지출 영수증 상에 부가세가 표기되어있다면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으로 회계 감사보고서에 명기해야합니다.

예시) 만약 장비대여료로 1,000,000원을 지불할 시 영수증 상 과세금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정산 시에는 1,000,000원이 인정비용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909,091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